

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10. 16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241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9. 27. 복진경의원 대표발의(13명 발의)
나. 상정의결
-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(2023. 10. 16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대표발의자 : 복진경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○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세무사를 추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
○ 공인회계사 외 세무사 직 추가
○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관련 조항 삭제
- 다. 참고사항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○ 입법예고 : 2023. 10. 5. ~ 10. 9.(5일간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본 조례안은,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구성의 전문성·윤리성을 강화하고자 행정재경위원회 복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임.
-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는 시·군 및 자치구의 결산검사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도록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(제1항),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고,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(제2항),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의 범위를 “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”으로 설정하고 있는데,

「지방자치법」 시행령 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- 현행 조례는 제3조제2항제3호에서 “공인회계사”만을 설정하여 상위법령이 설정하는 전문가 선임 폭을 협소화하여 세무사 직역 등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
- 또한, 개정안 제3조에서 제2항제4호를 삭제하였는데, 이는 전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“전관예우” 관행의 제도적 규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지방의원 사회의 윤리성 강화를 위해 삭제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.
- 따라서, 본 조례안은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및 윤리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 전직 의원 중 전문성이 높아 결산검사위원으로 부득이 선임해야 할 경우에는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“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,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”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3. 공인회계사,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선임방법 및 자격) ① (생략)</p> <p>② 의원 이외의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공인 회계사</u></p> <p>4. <u>지방의회의원 경력자 중 결산검사위원으로 경력이 있었던 자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선임방법 및 자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공인회계사,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